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8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진선미·신영대·임오경

이학영 · 한병도 · 안태준

한정애 · 김영호 · 김문수

서영교 · 정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행법에서 위의 상황에서 점멸등 작동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여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 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안 제53조).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을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로,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을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 장치와 표시는 그 외의 경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영유아가 하차 하는 때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		
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	는 경우에		
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			
여야 하며, <u>어린이나 영유아를</u>	<u>어린이나 영유아를</u>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		
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			
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위 장치와 표시</u>		
	는 그 외의 경우에 사용하여서		
	<u>는 아니 된다.</u>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⑧ 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		
	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영유아		
	가 하차하는 때 학부모 등 보		
	호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		
	다.		